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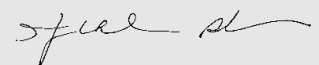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는 그 지원사업의 하나로서 특히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 유능한 인적자원의 채용 및 관리와 원만한 노사관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이 책자는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근로시간·휴일·휴가나 임금·취업규칙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위해 이 작은 책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Invest KOREA 커미셔너 안 홍 철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

CONTENTS



0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06

1. 노동시장 동향..... 06
2. 노사관계 동향..... 07



02 채용.....08

1. 채용방법08
2. 수습기간08



03 근로계약.....09

1. 근로계약 체결09
2. 근로계약 기간09
3. 기간제 근로자 고용.....09
4. 파견근로자10



04 임금.....14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14
2. 임금지불 방법14
3. 최저임금15
4. 휴업수당15
5. 연봉제16
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16



05 근로시간.....17

1. 법정근로시간17
2. 휴게시간17
3. 연장근로17
4. 야간근로18
5. 가산임금18
6. 여성과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제한19
7. 다양한 근로시간제도19



06 휴일과 휴가21

1. 주휴일21
2. 약정휴일21
3. 연차휴가21
4. 휴가사용 촉진제도22

	5. 선택적 보상휴가제	22
	6. 생리휴가	23
	7. 산전후휴가	23
	07 사회보험	24
	08 퇴직급여제도	25
	1. 퇴직급여	25
	2. 퇴직금	25
	3. 퇴직연금	26
	09 해고(징계해고)	27
	1. 정당한 이유의 필요성	27
	2. 해고의 절차	27
	3. 해고 예고	28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8
	10 취업규칙	30
	11 차별금지 및 직장내 성희롱	31
	1. 차별금지	31
	2. 직장내 성희롱	31
	12 노동조합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33
	1. 노동조합의 설립	33
	2.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제도	33
	13 노사협의회	35
	1. 노사협의회 설치	35
	2. 노사협의회의 의제	35
	14 채용 관련 연락처	37
	부록	43
	1. 투자종합상담센터 안내	44
	2. 외투기업 협의체	46
	3. 투자관련 유관기관	47
	4. Invest KOREA 해외 네트워크	48
	5. 비즈니스 관련 정보	53

0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1. 노동시장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한국의 국가경제는 2010년에 회복되었습니다. 2010년에 국내총생산은 6.2% 성장하였으며 고용률도 전년도의 0.3%에서 1.4%로 상승하였습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인 8.6%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청년실업률이 8.0%로 전체 실업자의 37%에 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노동수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노동시장 동향

(출처: 고용노동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성장률(%)	4.2	5.1	5.0	2.5	3.5	6.2
1인당 GNI(USD)	16,413	18,372	20,045	19,296	17,175	20,759
취업자 증감률(%)	1.3	1.3	1.2	0.6	-0.3	1.4
실업률(%)	3.7	3.5	3.2	3.2	3.6	3.7
실업자 수(천명)	887	827	783	769	889	920
명목임금상승률(%)	8.1	5.7	6.6	3.1	-0.7	6.1
실질임금상승률(%)	5.2	3.4	3.9	-1.5	-3.4	3.0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2	2.5	4.7	2.8	2.9



2. 노사관계 동향

한국의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의 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 결과, 불법분규 발생건수, 근로손실일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한국정부는 이러한 추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조가입률은 2009년 현재 10.1%로 미국 12.3%, 영국 27.4%, 호주 19.7%, 일본 18.5%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노사관계 동향

(출처: 고용노동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사분규	287	138<253>	115<212>	108<130>	121<175>	86<184>
파업참가인원	117,912	131,359	93,385	114,290	80,964	39,736
근로손실일수	847,697	1,200,567	536,285	809,402	626,921	511,307
평균 분규 일수	48.6	54.5	33.6	37.0	27.9	36.2
불법분규	17(5.9%)	24(17.4%)	17(14.8%)	17(15.7%)	11(9.1%)	14(16.3)

※〈〉안의 숫자는 산별노조 파업에 참여한 개별 사업장 각각을 노사분규 건수에 반영하는 2006년 이전 방식대로 계산한 노사분규 건수임.



1. 채용방법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채용을 위해서는 다음 기관과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81개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24개소)
-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

※자세한 내용은 「14. 채용 관련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2. 수습기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서 10%를 삭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범위(2년)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제 및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동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파견근로자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사업자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라고 합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
- 건설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 유해, 위험 업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한국표준 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상업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상업무	비 고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 (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03

근로계약

한국표준 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상업무	비 고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근로자 파견 기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1년 이내	3자간 합의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단, 고령자(만 55세)인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연장가능.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월 이내	3자간 합의로 3월 연장가능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에 정한 퇴직금 또는 각종 수당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수 또는 시간수)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계산에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의 계산에 적용합니다.
- ※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지불 방법

임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직접지급** :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은행 요구불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나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전액지급** : 법령,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통화지급** :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정기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은 예외입니다.



3. 최저임금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2011년 적용 최저임금액 (2011. 1. 1 ~ 2011. 12. 31)

- 시간급 4,320원, 일급 34,560원(8시간 근로기준)

모든 사업주는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시·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예외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80%(시간급 3,456원)가 적용됩니다.

-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간급 3,888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휴업 기간 중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원료 부족,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등의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 예외

-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연봉제

연봉제는 근로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연봉제는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노동법상의 임금 지급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 임금이 매년 단위로 결정되더라도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봉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 계약은 임금액의 산정을 매년 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의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상여금,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제는 2004년부터 기업의 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휴게시간

근로자가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행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합의로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단, 주40시간제를 적용한 후 최초 3년간은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체협약 등을 통한 집단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업

아래 사업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운수업
- 물품판매업

-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 통신업
-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 접객업
- 소각 및 청소업
-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

●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 임신한 여성은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4.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간주합니다.

5. 가산임금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3년간은 연장근로 시간의 최초 4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에 대한 100%의 임금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여성과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제한

이상의 여성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7.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계절, 월, 요일에 따라 업무량이 다른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적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일에 1일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적용 제외 근로자

-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2)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시각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근로자의 범위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해야 하는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 그 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 시각
- 근로자가 본인이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시각
- 표준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계산을 위한 기준)

3) 재량 근로시간제도

재량 근로시간제도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업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다음 사항을 서면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대상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1. 주휴일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취업규칙 등에 일하도록 정해진 날)를 모두 출근하면, 사용자는 1주일에 대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특정한 날로 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2. 약정휴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법정휴일 이외에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일을 가리키며,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공휴일 등을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노사의 약정에 따릅니다.

3.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최초 1년간 근로한 경우 다음 해에 부여하는



15일의 휴가에서 최초 1년 동안 사용한 휴가를 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4년째부터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연차휴가는 25일을 상한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휴가사용 촉진제도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이 끝나기 3개월전 시점에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미사용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선택적 보상휴가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 지 일 단위로 부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대한 노사합의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시기, 언제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6.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90일은 달력상의 기간으로서 각종 휴일이 포함된 일수입니다.

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후에 45일 이상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90일을 초과한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산전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임신 16-21주 : 유산, 사산일로부터 30일간
- 임신 22-27주 : 유산, 사산일로부터 60일간
- 임신 28주 이상 : 만기출산과 같이 90일간



	가입의무	보험료	납부주기
국민연금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의 9% (사업주) 4.5% (근로자) 4.5%	매월
건강보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월 총 보수의 5.6% (사업주) 2.82% (근로자) 2.82%	매월
고용보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 임금총액의 0.25~0.85%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 전액 지급) - 실업급여 : 임금총액의 0.9% (사업주) 0.45% (근로자) 0.45%	매월
산재보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전액부담. 매년 업종별로 정함. (업종별 임금총액 × 0.006~0.354)	매월



1. 퇴직급여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퇴직급여제도로써 도입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2013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제도를 선택한 사업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기업의 소멸, 정년,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후 향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기간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며, 사업장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중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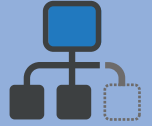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는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은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일시금은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 후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며, 노사가 법정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과 관련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유의 필요성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사업장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포함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사명령, 업무지시 위반
- 무단결근
- 직장이탈, 근무태만
- 근무성적불량
- 직무상 부정행위
- 직장에서의 폭행, 폭언
- 직무외 비행 및 범법행위
-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위반
- 회사의 재산상 손실 초래
- 회사비방 및 명예손상
- 복무수칙 및 안전수칙 위반
- 학력, 경력위조, 사칭

2. 해고의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나 징계절차를 정해놓은 경우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해고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고나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3개월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로한 월급근로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자
-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수습근로자
- 계절적 업무를 위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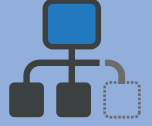
-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리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경우
-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축소, 근로시간 감축 등 인건비 절감
- 신규 채용 중지
- 임시직 등의 재계약 정지
- 배치전환, 사외파견, 전직훈련,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 일시휴업(휴직)
- 퇴직희망자 모집
- 사무실 규모 축소
- 임원임금 동결

3)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성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 해고 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대해 사용자가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이전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서명한 의견서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배되서는 안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되며, 무효로 된 부분 대신 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 됩니다.



1. 차별금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다음과 같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성별, 국적, 신앙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지급 또는 자금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는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도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때 성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성희롱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노동조합의 설립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기업별 노조 또는 산업별 노조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는 법으로 허용됩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제도

2010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사용자는 노사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노조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이 없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 활동 등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해당되며,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기타 노사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조활동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이 금지됩니다. 노사는 노조전임자의 숫자나 업무를 결정할 수 있으나,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합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입니다.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2. 노사협의회 의제

노사협의회 의제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협의사항

-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증진,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고충처리,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생활 양립지원, 그 밖의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 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 위원회의 설치



※ 근로자위원회는 협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사용자에게 사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경영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고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 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 사용자가 보고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위원회는 사용자가 보고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81개소)

● 서울

고용센터	Tel	Fax
서울고용센터	02-2004-7031	6915-4010~24
서초고용센터	02-580-4900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94	6915-4025~35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924	6915-4043~52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00	6915-4057~64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300	6915-4070~79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00	6915-4085~92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00	6915-4098~106

● 경기도

고용센터	Tel	Fax
인천고용센터	032-460-4701~4	0505-130-0010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12-1919~20	0505-130-0029
부천고용센터	032-320-8900	0505-130-0049
김포고용센터	031-999-0900	031-983-9469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812	0505-130-0055~62
구리고용센터	031-560-5815	0505-130-0068
고양고용센터	031-920-3937	0505-130-0072~80
수원고용센터	031-231-7864	0505-130-0085
용인고용센터	031-289-2210	0505-130-0098
평택고용센터	031-646-1202~3	0505-130-0104
평택고용센터 안성출장센터	031-671-1921~2	031-671-1928



14

채용 관련 연락처

● 경기도

고용센터	Tel	Fax
안양고용센터	031-463-0700	0505-130-0122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02-6915-4112
안산고용센터	031-412-6993	0505-130-0136
시흥고용센터	031-496-1909	0505-130-0149
성남고용센터	031-739-3174	0505-130-0159
성남고용센터 이천출장센터	031-632-9898	0505-130-0161
경기광주고용센터	031-769-0168~9	0505-130-0167

● 강원도

고용센터	Tel	Fax
춘천고용센터	033-250-1900	0505-130-0178~81
강릉고용센터	033-610-1919	0505-130-0183~5
속초고용센터	033-630-1919	0505-130-0188
원주고용센터	033-769-0900	0505-130-0193~7
태백고용센터	033-552-8605	550-8660
태백고용센터 삼척출장센터	033-573-9911	573-9916
영월고용센터	033-371-6260	0505-130-0205

● 경상도

고용센터	Tel	Fax
부산고용센터	051-860-1919	862-5927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103	719-4525
부산북부고용센터	051-330-9900	330-9828



고용센터	Tel	Fax
창원고용센터	055-239-0900	261-7742
마산고용센터	055-259-1500	299-7348
창원고용센터 진해출장센터	055-547-6277	547-6280
울산고용센터	052-228-1919	228-1929
김해고용센터	055-330-6400	0505-130-1050
김해고용센터 밀양출장센터	055-356-8225	0505-130-1058
양산고용센터	055-379-2400	0505-130-1068
진주고용센터	055-753-9090~1	0505-130-1076
하동고용센터	055-884-8219	884-7283
통영고용센터	055-650-1800	0505-130-1100
거제고용센터	055-730-1919	0505-130-1113
대구고용센터	053-667-6000	667-6104
경산고용센터	053-667-680	720-4029~30
대구북부고용센터	053-605-6500	720-4036
대구강북고용센터	053-606-8000	720-4049
포항고용센터	054-280-3000	280-3105
포항고용센터 울진출장센터	054-783-0841	783-9441
경주고용센터	054-778-2500	744-8219
구미고용센터	054-440-3300	0505-130-3030
김천고용센터	054-431-2728	0505-130-3050
영주고용센터	054-639-1122	0505-130-3062
문경고용센터	054-556-8219	0505-130-3074
안동고용센터	054-851-8061	0505-130-3081

14

채용 관련 연락처

● 전라도

고용센터	Tel	Fax
광주고용센터	062-609-8500	062-712-4501
전주고용센터	063-270-9100	0505-130-4042
정읍고용센터	063-532-8216	0505-130-4056
남원고용센터	063-631-1919	0505-130-4061
익산고용센터	063-840-6500	0505-130-4069
익산고용센터 김제출장센터	063-548-1919	0505-130-4083
군산고용센터	063-450-0600	0505-130-4089
군산고용센터 부안출장센터	063-581-7637	0505-130-4100
목포고용센터	061-280-0500	0505-130-4001
순천고용센터	061-720-9114	0505-130-4021~4023
여수고용센터	061-6500-155	0505-130-4034

● 충청도

고용센터	Tel	Fax
대전고용센터	042-480-6000	042-717-4006
공주고용센터	041-851-8501~10	0505-130-2001
공주센터 논산출장센터	041-731-8600	0505-130-2007
공주센터 연기출장센터	041-861-8900	0505-130-2014
청주고용센터	043-230-6700	0505-130-2062
옥천고용센터	043-731-7414	0505-130-2081
천안고용센터	041-620-7400	0505-130-2021
충주고용센터	043-850-4000	043-842-7763



고용센터	Tel	Fax
제천고용센터	043-652-1919	0505-130-2103
보령고용센터	041-930-6200	0505-130-2041
서산고용센터	041-669-1919	0505-130-2053

2.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24개소)

지방사무소	Tel	Fax
서울지역본부	3274-9604	3275-1104
서울동부	2024-1733	461-8303
서울남부	876-8322~4	885-6718
강원	248-8500	248-8540
강릉	650-5700	650-5729
부산지역본부	330-1910	343-1453
부산남부	620-1910, 1970	621-7386
경남	212-7200	212-7249
울산	276-9031~3	261-9034
대구지역본부	586-7600~4	586-7605
경북	855-2121~3	855-2001
포항	278-7704	278-7732
경인지역본부	820-8600	819-3985
경기	249-1201	249-1210
경기북부	850-9112~6	853-7364
성남	750-6200	750-6210
광주지역본부	970-1700~5	972-2764





지방사무소	Tel	Fax
전북	210-9200~3	210-9251
전남	720-8500	725-5097
목포	282-8671~4	284-1959
제주	729-0701~3	729-0704
대전지역본부	580-9100	586-8826
충북	279-9000	278-3086
충남	620-7600	620-7630

3.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Korea Labor Foundation Outplacement Service Center)

- Tel: (82-2) 6021-1100
- Fax: (82-2) 6021-1480
- Website: www.newjob.or.kr

4.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 www.moel.go.kr

5. 고용노동부 취업 포털사이트: www.work.go.kr

부록



APPENDICES

01 투자종합상담센터 안내	44
02 외투기업 협의체	46
03 투자관련 유관기관	47
04 Invest KOREA 해외 네트워크	48
05 비즈니스 관련 정보	53

IK 투자종합상담센터(ICC)는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초기단계 투자컨설팅과 투자이행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처리, 투자완료 후 한국정착에 필요한 생활지원까지 외국인투자 전 과정에 대해 원스톱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종합상담센터는 외부에서 채용된 민간전문가와 정부 주요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이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투자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모든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투자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세무, 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비자발급, 현물출자완료확인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교부 업무 등을 직접 처리하고, 생활상담, 1일 도우미 서비스, 생활밀착 지원, 외부전문기관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투자종합상담센터는 외국투자가와 그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화, 팩스, 온라인, 화상 전화 등으로 상담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방문 상담 : 사전예약 가능
- 전화 상담 : 전화, 팩스 상담 가능
- 온라인 상담 : ICC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면 48시간 이내에 답변
www.investkorea.org → ICC → Q&A
- 화상 상담 : 현재 Seoul Global Center, 인천FEZ에서도 화상전화를 통해 ICC 서비스 이용 가능/
단계적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및 FEZ로 확대 예정

문의처

- 대표번호 : (82-2) 1600-7119
- 팩스 : (82-2) 3497-1611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제공언어 : 영어, 일본어, 한국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Invest Korea Plaza 2층 투자종합상담센터

서비스 개요 : 외국인투자가 행정처리 및 지원서비스, 투자컨설팅 서비스, 생활정착서비스

● 행정처리 및 지원서비스

- 외국인투자신고 상담 및 등록(변경등록 포함)
-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검토 확인 신청
- 조세감면제도 상담
- 사업자등록
- 자본재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발급
- 관세 관련 상담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신청 안내 및 지원
- 기업투자(D-8) 비자발급 및 동반가족(F-3), 가사보조인(F-1)의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인 투자지역 등 산업 입지 알선
- 입지, 생활 상담, 인허가
- 외국인 투자기업 인사노무 상담

● 투자 컨설팅

- 외국인투자절차 및 요건, 인센티브 등 외국인투자제도 일반 상담
- 세무, 회계,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심층 컨설팅
-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의 유·무료 상담 주선

● 생활정착 서비스

- 주거, 교육, 의료, 운전면허 취득 등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병원, 레스토랑, 공연 등 대리 예약 지원
- 일일비서서비스 : ICC 컨설턴트가 병원, 학교 등 현장 동행, 업무처리를 지원
- 생활안내 웹진 및 Guide to Living in Korea 발간
- 생활지원 전담코디 지정 : 외투기업 임직원,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 1년간 한국 생활 전반에 걸쳐 밀착 지원

02

외투기업 협의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타워 4501호

Tel: (82-2) 564-2040

Fax: (82-2) 564-2050

Email: amchamrsvp@amchamkorea.org

서울재판클럽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25 서울신문사 프레스센터빌딩 8층

Tel: (82-2) 739-6962

Fax: (82-2) 739-6961

Email: sjchp@sjchp.co.k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가 310 국도호텔 21층

Tel: (82-2) 725-9880~5

Fax: (82-2) 725-9886

Email: euinfo@eucck.org

03

외국인투자관련 유관기관

기관명	관련 부서	Tel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2150-7612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	2100-7806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2100-2970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	2100-676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3704-9468
농림수산물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500-1872
환경부	환경산업팀	2110-7758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2110-7431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	02-2110-8103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2156-9665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750-1711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2171-2842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1-888-4801
대구광역시	투자유치단	053-803-3472
인천광역시	투자유치담당관	032-440-3298
광주광역시	기업유치지원관	062-613-4071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042-600-3683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052-229-3072
경기도	투자진흥과	031-249-2762
강원도	외자유치과	033-249-3433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	043-220-3235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042-220-3853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063-280-3563
전라남도	기업유치과	061-286-5132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053-950-3533
경상남도	투자유치과	055-211-3213

북미

뉴욕KBC

주소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TEL : (1-212) 826-0900
 FAX : (1-212) 888-4930
 Homepage : <http://www.kotra.or.kr>
 E-mail : kotrany@hotmail.com

달라스KBC

주소 : 3030 LBJ freeway Suite 1200, Dallas, TX 75234
 TEL : (1-972) 243-9300
 FAX : (1-972) 243-9301
 Homepage : kotrana.com
 E-mail : info@kotradallas.com

디트로이트KBC

주소 : 2000 Town Center Suite 2850, Southfield,
 MI 48075, U.S.A.
 TEL : (1-248) 355-4911
 FAX : (1-248) 355-9002
 Homepage : <http://kotrana.com>
 E-mail : detroit@kotradtt.org

로스앤젤레스KBC

주소 : 4801 Wilshir Blvd. Los Angeles, CA 90010 U.S.A
 TEL : (1-323) 954-9500
 FAX : (1-323) 954-1707
 Homepage : <http://kotrana.com>
 E-mail : laktcd@hanmail.net

밴쿠버KBC

주소 : Suite#780, 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Canada, V6C 3E1
 TEL : (1-604) 683-1820, 687-7322
 FAX : (1-604) 687-6249
 Homepage : <http://www.kotra.or.kr>
 E-mail : ktc@kotrayvr.com

시카고KBC

주소 : 111 E. Wacker Drive, Suite 2229, Chicago,
 IL 60601
 TEL : (1-312) 644-4323
 FAX : (1-312) 644-4879
 Homepage : <http://kotrana.com>
 E-mail : info@kotrachicago.com

실리콘밸리KBC

주소 : 1875 South Grant St, Suite 640, San Mateo,
 CA 94402
 TEL : (1-650) 571-8483
 FAX : (1-650) 571-8065
 Homepage : www.kotrasf.org
 E-mail : info@kotrasf.org

워싱턴KBC

주소 : 1225 Eye St. NW #920 Washington DC 20005
 TEL : (1-202) 857-7919
 FAX : (1-202) 857-7923
 Homepage : www.kotra.or.kr
 E-mail : washington@kotra.or.kr

토론토KBC

주소 : 65 Queen St. W. Suite 600, Toronto, ON, M5H
 2M5
 TEL : (1-416) 368-3399
 FAX : (1-416) 368-2893
 Homepage : <http://www.kotrana.org>
 E-mail : info@kotra.ca

중국

베이징KBC

주소: 北京市 朝陽區 38號 現代汽車大廈 2201號(100027)
TEL : (86-10) 6410-6162
FAX : (86-10) 6505-2310
Homepage : www.kotrachina.org
E-mail : pekktc@kotra.or.kr

상하이KBC

주소: Room 3101, 3110-3112,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d Shanghai, China 200336
TEL : (86-21) 5108-8771
FAX : (86-21) 6219-6015
Homepage : www.kotrachina.org
E-mail : shanghai@kotra.or.kr

칭다오KBC

주소: 青島市 香港中路 40號 旗艦大廈 15层
TEL : (0532) 8388-7931/4
FAX : (0532) 8388-7935
Homepage : <http://www.cura.com.cn/Floor/Display.aspx?id=168>
E-mail : david@erashandong.com

타이베이KBC

주소: 臺北市 基隆路 一段 333號 國貿大樓 2214室
TEL : (886-2) 2725-2324
FAX : (886-2) 2757-7240
Homepage : <http://kotra.or.kr>
E-mail : kotra.tpe@msa.hinet.net

홍콩KBC

주소: Rm 3102, 31F,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K
TEL : (852-2) 545-9500
FAX : (852-2) 815-0487
Homepage : www.kotra.or.kr
E-mail : kotra@kotra.org.hk

항저우KBC

주소: 中國 杭州市 民心路 100号 万银国际大廈 3304室
TEL : 86-136-0652-7486
FAX : 86-571-8110-3099
Homepage : www.kotra.or.kr

일본

나고야KBC

주소: 23FL.,Nagoya Intl Bldg,47-1, Nagono1-Chome,
Nakamura-Ku, Nagoya-Shi
TEL : (81-52) 561-3936
FAX : (81-52) 561-3945
Homepage : www.kotra.or.jp
E-mail : nagoya@kotra.or.jp

도쿄KBC

주소: 9F. Shinkokusai Bldg. 4-1 Marunouchi 3-
Chome, Chiyoda-Ku,Tokyo
TEL : 03-3214-6951
FAX : 03-3214-6950
Homepage : www.kotra.or.jp
E-mail : kotrakey@kotra.or.jp

오사카KBC

주소: 7th FL.,Sakaisuji-Honmachi Center B/D,
1-6Honmachi 2-chome,Chuo-ku,Osaka
TEL : (81-6) 6262-3831
FAX : (81-6) 6262-4607
Homepage : www.kotra.or.jp
E-mail : osaktc@kotra.or.jp



후쿠오카KBC

주소 : Nihonseimei Hakataekimae Bld. 11F, Hakataekimae
3-2-1, Hakata-ku, Fukuoka-city, Japan
TEL : (81-92) 473-2005
FAX : (81-92) 473-2007
Homepage : <http://www.kotra.or.kr/unicenter>
E-mail : fukuoka@kotra.or.jp

독일 프랑크푸르트KBC

주소 : Mainzer Land str 27-31. 60329,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 : (49-69) 2429-920
FAX : (49-69) 2533-89
Homepage : <http://www.kotra.or.kr/frnakfurt>
E-mail : frankfurt@kotra.or.kr

독일 함부르크KBC

주소 : Ludwig-Erhard-Strasse 20, 20459 Hamburg,
Germany
TEL : (49-40) 3405-740
FAX : (49-40) 3405-7474
Homepage : <http://kotra.or.kr/hamburg>
E-mail : info@kotra.de

이태리 밀라노KBC

주소 : Via Larga 2 - 20122, Milano, Italy
TEL : (39-02) 795813
FAX : (39-02) 798235
Homepage : www.kotra.or.kr/milano
E-mail : kotramil@kotra.it

벨기에 브뤼셀KBC

주소 : Boulevard du Roi Albert II 30, bte14 1000
Brussels
TEL : (32-2) 203-2142
FAX : (32-2) 203-0751
Homepage : <http://www.kotra.or.kr/brussels>
E-mail : ktcbu@skynet.be

오스트리아 빈KBC

주소 : Mariahilferstrasse 77-79/1/3 1060 Wien, Austria
TEL : (43-1) 586-3876
FAX : (43-1) 586-3979
Homepage : <http://www.kotra.or.kr/vienna>
E-mail : kotravie@kotra.at

유럽**영국 런던KBC**

주소 : 1st Floor, Brettenham House North, 12-13
Lancaster Place, London WC2E 7EN
TEL : +44 (0)20 7520 5300
FAX : +44 (0)20 7240 2367
Homepage : <http://>
E-mail : kotra@kotra.co.uk

스페인 마드리드KBC

주소 : Torre Europa, Paseo Castellana, 95, 10, 28046,
Madrid, Spain
TEL : (34-91) 556-6241
FAX : (34-91) 556-6868
Homepage : <http://www.kotra.or.kr/madrid>
E-mail : madktc@kotra.or.kr

독일 뮌헨KBC

주소 : Tal 12 D-80331 Muenchen, Germany
TEL : (49-89) 2424-2630
FAX : (49-89) 2424-2639
Homepage : <http://www.kotra.or.kr/munich>
E-mail : munich@kotra.or.kr

스웨덴 스톡홀름KBC

주소: Svardvagen 11C, 182 33 Danderyd, Sweden
TEL : (46-8) 30 80 90
FAX : (46-8) 30 61 90
Homepage : <http://www.kotra.or.kr/stockholm>
E-mail : kotra.sto@kotra.nu

네덜란드 암스테르담KBC

주소: WTC Bldg. Strawinskyaan 767, 1077 XX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 (31-20) 673-0555
FAX : (31-20) 673-6918
Homepage : www.koreatradecenter.nl
E-mail : info@koreatradecenter.nl

스위스 취리히KBC

주소: Claridenstr. 36, 8002 Zuerich, Switzerland
TEL : (41-44) 202-1232
FAX : (41-44) 202-4318
Homepage : www.kotra.or.kr/zurich
E-mail : ktc@kotra.ch

덴마크 코펜하겐KBC

주소: Holbergsgade 14, 2nd Fl., DK-1057,
Copenhagen K, Denmark
TEL : (45) 3312-6658
FAX : (45) 3332-6654
Homepage : www.kotra.or.kr/copenhagen
E-mail : info@kotra.dk

프랑스 파리KBC

주소: 19 Avenue de l'Opera, 75001 Paris, France
TEL : (33-1) 55 35 88 88
FAX : (33-1) 55 35 88 89
Homepage : www.kotra.or.kr/paris
E-mail : paris@kotra.fr

CIS지역

러시아 모스크바KBC

주소: Rm 908 & 130, WTC, 12 Krasnopresnenskaya
nab. Moscow, 123610, Russia
TEL : (7-495) 258-1627
FAX : (7-495) 258-1634
Homepage : <http://kotra.or.kr/moscow>
E-mail : moscow@kotra.or.kr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KBC

주소: PO BOX 12859, SHEIKH ZAYED RD, DUBAI, UAE
TEL : (971-4) 332-7776
FAX : (971-4) 329-1300
Homepage : <http://www.kotra.or.kr/dubai>
E-mail : dxbktrc@emirates.net.ae

동남아, 대양주**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KBC**

주소 : Level 3,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 3004
 TEL : (61-3) 9867-1988
 FAX : (61-3) 9867-2688
 Homepage : www.kotra.or.kr/mel
 E-mail : koreatrade@bigpond.com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KBC

주소 : Suite2404, Level24, 1 Market st. Sydney,
 NSW2000, Australia
 TEL : (61-2) 9264-5199
 FAX : (61-2) 9264-5299
 Homepage : <http://www.kotra.or.kr/sydney>
 E-mail : info@kotra.org.au

인도 뭄바이KBC

주소 : No.93, 9th Floor, Maker Chamber 6, Nariman
 Point, Mumbai-400 021, India
 TEL : (91-22) 6631-8000
 FAX : (91-22) 6631-8780
 Homepage : www.kotra.or.kr/mumbai
 E-mail : ktc_mum@yahoo.com

싱가포르KBC

주소 :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
 TEL : (65) 6221-3055
 FAX : (65) 6223-5850
 Homepage : www.sunteccity.com.sg
 E-mail : www.sunteccity.com.sg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KBC

주소 : 9th Fl., Mui Plaza, jalan P. Ramlee, 50250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117-7100
 FAX : (603) 2142-2107
 Homepage : www.kotra.or.kr/kualalumpur
 E-mail : chung@kotrakl.com.my

인도네시아 자카르타KBC

주소 : Wisma GKBI, 21st Fl. Suite 2102, Jl. Jendral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TEL : (62-21) 574-1522
 FAX : (62-21) 572-2187
 Homepage : <http://www.kotra.or.kr/jakarta>
 E-mail : jakarta@kotra.or.kr

법무법인

법무법인	Homepage
법무법인 태평양	http://www.bkl.co.kr/eng/main/main.asp
법무법인 광장	http://www.leeko.com
법무법인 세종	http://www.shinkim.com/eng
법무법인 화우	http://www.hwawoo.com/eng/index.asp
법무법인 율촌	http://www.yulchon.com
법무법인 총정	http://www.hmpj.com
법무법인 바른	http://www.barunlaw.com/english/main.asp
법무법인 로고스	http://www.lawlogos.com/eng/main/main.asp
법무법인 지평지성	http://www.js-horizon.com/new/eng
법무법인 원	http://www.one21.co.kr
김앤장 법률사무소	http://www.kimchang.com
법무법인 대륙	http://www.deryooklaw.com

회계법인

회계법인	Homepage
다산회계법인	http://dasancpa.com/english/main.htm
대명회계법인	http://www.dmgmt.co.kr/english/index.asp
대주회계법인	http://bdodaejoo.co.kr/eng
동남회계법인	http://www.dongnamcpa.com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http://www.deloitte.com/view/en_KR/kr/index.htm
삼일회계법인	http://www.pwc.com/kr/en/index.jhtml
삼화회계법인	http://shcpa.co.kr
선명회계법인	http://www.smcpa.co.kr
성도회계법인	http://www.sungto.co.kr

회계법인

회계법인	Homepage
우리회계법인	http://www.dfkkorea.com
우림회계법인	http://www.wrac.co.kr
	http://www.goodaccount.co.kr
이현회계법인	http://www.ehyunac.com/ENG/index.html
일신회계법인	http://www.ilshincpa.co.kr
충정회계법인	http://www.horwath.co.kr/eng/index.asp
태영회계법인	http://www.tya.co.kr
한경회계법인	http://www.hko.co.kr/index-e.html
한영회계법인	http://www.ey.com
회계법인 지평	http://www.g-pyung.com
회계법인리안	http://www.liancg.com/eng/about.htm
KPMG삼정회계법인	http://www.kr.kpmg.com/Home.asp?lang=en

부동산

서울시		
종로구	중앙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34-1557
	현대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63-8833
	진솔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38-4984
종로구	아름 공인중개사사무소	82-2-2233-4800
	국제 공인중개사사무소	82-2-2233-2525
	현대 공인중개사사무소	82-2-2256-9988
	유비쿼터스 공인중개사사무소	82-2-2256-0142
용산구	스타빌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8-8990
	삼성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17-3399

용산구	온누리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6-4955
	하나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14-5873
	에덴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3-4774
	지니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49-5959
	아시안타이거즈 부동산 중개주식회사	82-2-790-1844
	이안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11-0599
	동원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2-1035
	국일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8-0123
	평화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2-1006
	랜드마크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7-4555
	연세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8-3223
	알프스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74-1588
	비바컨설팅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2-5500
	엘에이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0-3555
	나이스렌트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3-8866
	한신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8-9966
	에이앤에이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4-1133
	지우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7-8814
	비전21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49-9500
	준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19-8289
	힐탑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5-4999
	뉴타운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7-8200
	써미트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65-6820
	서울부동산net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6-7114
	한솔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8-6262
	오리엔트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6-4400

05

비즈니스 관련 정보

부동산

서울시		
용산구	뉴타운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03-7888
	씨앤지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5-9043
	프라임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6-0023
	이레 부동산컨설팅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8-9888
	용산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2-7111
	국제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4-8844
	드림랜드하우징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4-0811
	에이스렌트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7-0330
	림코 부동산중개법인	82-2-749-9959
	유엔 공인중개사사무소	82-2-792-2558
	그린부동산컨설팅 중개사사무소	82-2-749-8070
	하이렌트컨설팅 중개사사무소	82-2-797-7277
광진구	강산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82-2-446-0092
	소백 공인중개사사무소	82-2-432-8949
송파구	LBA 리서스 공인중개사사무소	82-2-456-4989
동대문구	장한평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82-2-2249-0088
종랑구	우리 공인중개사사무소	82-2-433-8338
	금강 공인중개사사무소	82-2-977-5775
성북구	오리엔트 공인중개사사무소	82-2-3672-4400
	프라임 공인중개사사무소	82-2-983-4589
강북구	행복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82-2-982-1100
도봉구	산 공인중개사사무소	82-2-906-9911
	조은 공인중개사사무소	82-2-990-0708
	둘리마을 공인중개사사무소	82-2-990-9055
은평구	현대 공인중개사사무소	82-2-354-5533

은평구	예성 공인중개사사무소	82-2-383-2459
	은평 공인중개사사무소	82-2-353-1123
서대문구	LBA 문찬호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82-2-392-4040
	지우 공인중개사사무소	82-2-6414-8540
마포구	신화 공인중개사사무소	82-2-338-1550

부산		
해운대구	샛별 공인중개사사무소	82-11-585-8925
연제구	아람 공인중개사사무소	82-16-570-2375
부산진구	YES 공인중개사사무소	82-10-9901-5057

대구		
수성구	정용공인중개사	82-53-745-9999
	행복공인중개사	82-53-745-5770
	대우부동산중개	82-53-763-7000
	거성공인중개사	82-53-751-0012
	강호공인중개사	82-53-791-9987
	영재공인중개사	82-53-767-2468
	수성그린공인중개사	82-53-759-0083
	명당공인중개사	82-53-794-5500
	원부동산중개	82-53-295-9770
	일호공동공인중개사	82-53-756-4747
	박상준공인중개사	82-53-751-5990
	강호공인중개사	82-53-791-9987
	거북이공인중개사	82-53-795-0900
북구	궁전공인중개사	82-53-326-7044

부동산

대구		
북구	강산공인중개사	82-53-313-3003
	이강호부동산	82-53-294-3800
	팔공공인중개사	82-53-311-8080
	LBA맥공인중개사	82-53-313-7778
	미래공인중개사	82-53-958-4582
	강산공인중개사	82-53-313-3003
	대현공인중개사	82-53-957-2220
동구	부동산일번지	82-53-956-7775
	뉴월빙공인중개사	82-53-961-5100
	황강석공인중개사	82-53-984-9500
	36공인중개사	82-53-964-5342
	주민공인중개사	82-53-425-2822
	장원공인중개사	82-53-941-0039
	스마일공인중개사	82-53-965-2885
	성균관공인중개사	82-53-985-5252
	에이스부동산	82-53-959-1512
	이경수공인중개사	82-53-986-4989
서구	덕산공인중개사	82-53-556-5700
	조광공인중개사	82-53-552-930
남구	마이홈부동산	82-53-471-7009
	에이플러스	82-53-266-7963
	한빛공인중개사	82-53-472-3641
	마이플래닛 부동산중개사무소	82-53-476-6304
	남대구공동공인중개사	82-53-625-0808
	풍림공인중개사	82-53-475-3334

중구	위드공인중개사	82-53-474-7922
	삼성부동산중개	82-53-253-9329
달서구	선진부동산중개	82-53-655-0655
	신우방공인중개사	82-53-636-3600
	거성공인중개사	82-53-654-5878
	(주)대가야부동산	82-53-566-8000
	신대신공인중개사	82-53-655-4989
	태양공인중개사	82-53-588-3331
	삼성공인중개사	82-53-641-8844
	신행운공인중개사	82-53-523-2288
	탑부동산중개	82-53-292-3377
	한국공인중개사	82-53-611-0020
달성군	하나부동산	82-53-615-2533

광주		
동구	옥션코리아부동산중개컨설팅	82-62-222-8446
	새삼일공인중개사사무소	82-62-223-1140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	82-62-226-3600
서구	에덴부동산중개	82-62-376-4200
	홈컨부동산중개	82-62-385-9994
	굿모닝공인중개사사무소	82-62-381-5356
남구	청우공인중개사사무소	82-62-671-3556
북구	우천공인중개사사무소	82-62-268-2729
	부부공인중개사사무소	82-62-525-4080
	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	82-62-576-8910
	명당공인중개사사무소	82-62-431-2834

05

비즈니스 관련 정보

부동산

광주

광산구	중공인중개사사무소	82-62-962-7644
	로얄공인중개사사무소	82-62-956-0200
	스카이공인중개사사무소	82-62-951-9449
	효성공인중개사사무소	82-62-962-8877
	기쁜공인중개사사무소	82-62-951-9550

병원

병원	Homepage
서울대병원	http://www.snuh.org/english
순천향대학교병원	http://schuh-internationalclinic.com/index.asp
한양대학교 국제협력 병원	http://imc.hanyang.ac.kr/index.asp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http://www.khmc.or.kr/eng
세브란스병원	http://www.yuhs.or.kr/en
카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http://www.cmcseoul.or.kr/global/eng/front?cmd=international
삼성서울병원	http://www.samsunghospital.com/global/en/care/ihs.jsp
차병원	http://kangnam.chamc.co.kr/ic
서울대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http://healthcare.snuh.org/HEALTHCARE/main/MainPage_eng.aspx

발행처 Invest KOREA

출판책임자 안홍철

편집장 안홍철

영역 이지민

편집책임 이선일

디자인 및 제작 엔씨씨애드 (02-545-3634)

인쇄 화신문화 (02-2277-0624)

Copyright © 2011 대한민국

외국인투자종합상담센터(Invest KOREA)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릉로 13, Invest KOREA

전화 (82-2) 1600-7119 (투자종합상담센터 외국어 안내)

팩스 (82-2) 3497-1611

홈페이지 www.investkorea.org